

SNS프로필 상태메시지와 명예훼손

많은 사람들이 SNS를 이용하는 요즘, 몇몇 사람들은 프로필 상태메시지 기능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 기분 등을 표현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상태메시지 게시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을까요?

명예훼손죄의 판단기준에 대해 알아보시다.

사건 알아보기

피고인 A씨의 딸은 얼마 전 초등학교 같은 반에 재학 중인 B학생에게 따돌림을 받았습니니다.

피고인 측은 해당 초등학교에 B학생의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고, 학교 측은 B학생의 학교폭력이 있었음을 전제로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과 보복행위의 금지, 교내 봉사, 특별교육 등을 명하였습니다.

그 후 피고인 A씨는 자신의 SNS계정 프로필 상태 메시지에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

라는 글과 주먹 모양의 그림말 세 개를 게시하였고 B학생 측은 이를 이유로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법률에 대해 먼저 알아보까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심의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 죄!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위반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

유 죄!

정보통신망법 제17조 제1항(명예훼손)에 대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히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유죄!

대법원의 판결을 알아볼까요?

대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과 관련하여 “원심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서 정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확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혐의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띄어야 한다.

●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표현이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

● 특정 표현이 사실인지 의견인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사회적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1226 판결)

‘학교폭력범’은 ‘학교폭력을 저지른 사람’을 통칭하는 표현으로 특정인을 지정하지 않았으며 학교폭력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 현실을 고려하면 피고인 A씨가 실제 일어난 학교폭력을 언급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접촉금지’라는 말로 B학생이 받은 조치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졌음을 인정할 증거 또한 없으므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처/명쾌한 판사와 함께 하는 법원이야기)